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(조례 제 63호, 1988. 5. 1.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